

서울고등법원 2019. 5. 29 선고 2018나2053949(본소), 2018나2053956(반소) 판결 [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· 채무부존재확인]

---

## 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1. B

2. 유한회사 C

3. D

4. 유한회사 E

5. F

6. G 주식회사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신원, 윤민숙

변론 종결 2019. 5. 1.

판결 선고 2019. 5. 29.

제 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가합31951(본소), 2017가합37089(반소)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#### <본소>

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

가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 B는 611,100,000원,

나. 피고 유한회사 C는 212,538,000원,

다. 피고 D은 199,690,000원

라. 피고 유한회사 E은 235,374,000원,

마. 피고 F은 205,705,000원,

바. 피고 G 주식회사는 235,482,000원 및

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#### <반소>

원고에 대한

가.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2016. 7. 28.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계약금244,440,000원 반환채무,

나.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2016. 7. 28.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계약금 85,015,000원 반환채무,

다. 피고 D과 원고 사이에 2016. 7. 28.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계약금79,876,000원 반환채무,

라. 피고 유한회사 E과 원고 사이에 2016. 7. 28.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계약금

94,193,000원 반환채무,

마. 피고 F와 원고 사이에 2016. 7. 28.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계약금 82,282,000원 반환채무,

바. 피고 G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2016. 7. 28.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계약금 94,193,000원 반환채무는

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## 2. 항소취지

가. 원고의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.

원고에게,

1) 피고 B는 244,4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5. 31.부터,

2) 피고 유한회사 C는 850,15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4. 22.부터, 3) 피고 D은 79,876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3. 23.부터,

4) 피고 유한회사 E은 94,085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3. 21.부터, 5) 피고 F은 82,282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3. 21.부터,

6) 피고 G 주식회사는 94,193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3. 21.부터

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나. 피고의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, 피고들의 반소를 각하하였는데, 원고는 본소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[다만, 피고 B에 대하여는 244,440,000원(= 611,100,000원 - 366,660,000원) 부분에 관하여 패소하였는데, 그 중 244,400,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], 피고들은 본소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.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항소하지 않은 피고 B에 대하여 기각된 40,000원(= 244,440,000원 - 244,400,000원)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.

## 2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).

○ 제9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

(2)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송달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황병하, 판사 정충령, 판사 민달기